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72호)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95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1.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1
2.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3
II . 제안 배경 및 총괄적 검토	5
1. 제안 배경	5
2.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체계	6
3. 총괄 검토 의견	9
4.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1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15
1. 지역 및 지역 의사 적용 범위	15
2. 지역 의사 선발전형	20
3. 의무복무(또는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	25
4. 장학금 지원·중단·반환 및 보수 등 지원	39
5. 복무관리, 면허 자격정지 및 취소 등	48
6. 지역 의료 발전기금	56
7. 부칙	60

I. 개요

1.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원이의원 등 21인

(2) 제 안 일 : 2024. 6. 21.

(3) 회 부 일 : 2024. 6.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온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4,61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 근무하지 않으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현재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에 불과함. 지방의 의사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실제로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의 의사 결원율은 지난 2018년 7.6%에서 2022년 14.5%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은 수도권 대비 높은 임금을 제시해도 심각한 의사채용난을 겪어 필수

료분야 진료과를 수년간 휴진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2022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지역의사제에 찬성하였음.

이에 지역의를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6. 21.

(3) 회 부 일 : 2024. 6. 24.

나. 제안이유

의사 인력의 대도시 집중, 전문과목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2022년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시·도별 인구 10만명 당 의료인력 수는 1,056명인 반면 충북은 549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함. 또한 의료 접근성 분석 결과에서도 서울은 종합병원 도착 가능 시간이 3분인 반면, 충북은 27분 수준으로 확인됨.

이에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인 바, 지역 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에서 의료 제공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지역의를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근무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로 정의함(안 제2조).
- (2) 의과대학등에서 입학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입학자에 대해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3) 의과대학등을 졸업하고 지역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 근무할 기관 또는 시설을 정하여 10년간 근무하도록 함(안 제8조 등).
- (4)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역의사 또는 지역의사로 근무를 완료한 사람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5) 지역의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25조).

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제안 배경 및 총괄적 검토

1. 제안 배경

- 두 제정안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임.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의대생(또는 의대·치의대·한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10년간 특정 지역 또는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임.

- 제21대국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법안 2건(「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지역의사법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이 제1법안소위(2023. 12. 18.) 및 전체회의(2023. 12. 20.)에서 표결을 거쳐 가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하여는 정부 및 여·야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소위 및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협의

중에 있었으므로 정원규모 확대 결정 이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정부·여당)이 제기되어, 표결처리하게 된 것임.

2.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체계

□ 두 제정안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를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의대 등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국가는 장학금을 지원하며,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틀은 유사하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점이 있음.

□ 두 제정안의 내용상 주요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① 지역의사의 적용범위에 있어, 김원이의원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해당되나, 박덕흠의원안은 의사만 해당됨.

② 지역의사선발전형 중 해당 지역 출신 선발비율에 대하여 김원이의원안은 해당 대학의 의과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박덕흠의원안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③ 복무지역 및 기관과 관련하여, 김원이의원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공고한 시·도내에서 복무하도록 지역을 한정하고 있음. 복무기관은 두 제정안 모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시설에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박덕흠의원안은 지정할 수 있는 기관·시설의 종류를 원칙적으로 보건소, 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④ 복무기간은 두 제정안 모두 10년간으로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전문의 수련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박덕흠의원안은 이에 더해 의무장교,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하는 기간도 지역 의사 복무기간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⑤ 지역 의사 복무 의무의 미 이행 등으로 인한 면허 취소 후 재교부에 관하여 김원이의원안은 의무복무 잔여기간 동안 면허의 재교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나, 박덕흠의원안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⑥ 박덕흠의원안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김원이의원안은 기금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제정안의 주요내용 비교>

	김원이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적용범위	▲의대, 치대, 한의대	▲의대
선발방식	▲대학의 장은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 - 해당 지역 고등학교졸업자 일정 비율 이상 선발	▲대학의 장은 복지부가 고시하는 비율을 지역 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
복무지역·기관	▲지역 의사선발전형 공고 시·도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시설	▲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기관·시설 * 보건소,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 기타 지역 의사 배치가 필요한 기관·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
복무기간	▲10년간 의무복무 *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의 전문의 수	▲10년간 의무복무 * 의무장교,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

	김원이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련기간은 복무기간 산입	의사로 복무기간 산입 *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과목의 전문의 수련기간은 복무기간 산입
면허 취소후 재교부	▲의무복무 잔여기간 면허 재교부 금지	▲별도 규정 없음
지역의료 발전기금	▲별도 규정 없음	▲설치 근거 마련

□ 제정안들의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음.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김원이의원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의원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	제5조(지역의사선발전형)
제5조(장학금 지원)	제6조(장학금 지원)
제6조(장학금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제7조(장학금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제7조(의무복무)	제8조(지역의사)
	제13조(근무기간)
	제9조(근무명령 등)
	제16조(근무의 중지 등)
제8조(전공의 수련)	제17조(근무기간의 특례)
제9조(의무복무기관 배치 등)	제10조(근무기관 및 근무시설)
제10조(의무복무지역의 변경 등)	제11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제12조(지역의사의 파견)
	제14조(근무장소 이탈 금지)
제11조(지역의사의 겸직금지)	제15조(겸직금지)
	제18조(보수 등)
제12조(의무복무 실태 보고 등)	제19조(근무의 감독)
제13조(시정명령 등)	제20조(시정명령)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의원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의원안)
	제21조(근무기간의 연장)
제14조(지역의사 등에 대한 지원)	제24조(지역의사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면허취소 등)	제22조(면허취소)
	제23조(신분 상실)
	제25조(지역의료발전기금의 설치)
	제26조(지역의료발전기금운용심의회)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8조(과태료)

3. 총괄 검토의견

□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입원사망비율·뇌혈관사망비율·응급사망비율 등 각종 의료서비스 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고, 의료인력 측면에서도 지역별로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가장 많은 시도(서울, 3.6명)와 적은 시도(경북·세종, 1.4명)간 약 2.6배의 격차가 발생(2023년 12월 기준)하는 등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 병·의원의 경우 특히 이른바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인력수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가 지역 의료인력의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대학 입학과정에서부터 지역에서 일정기간 복무할 것으로 예정된 지역의사를 선발·교육하고 장학금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의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확대하며 비수도권 지역에 확대된 정원의 80% 이상을 집중 배정하고 지역인재선발 비율을 59.7%로 확대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나, 이에 대하여는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료인력 배치 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반대의견도 제시되고 있음.¹⁾

□ 또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실효성 측면에서 지역의료인프라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충분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함.²⁾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복무를 전제로 하는 법안 외에 자발적 계약을 통해 지역근무를 유인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법안³⁾도 제출되어 있는바, 지역의사제 도입 여부 및 그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 언론보도 “증원만으로 필수·지역의료 한계…시민들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공감”, 아시아투데이, 2024.6.3., “[사설]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료공백 해소하자”, 경남신문, 2024.7.31., “[사설]의대 졸업생 수도권 쏠림에 지역의료 씨가 말라”, 강원일보, 2024.8.2.

2)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3)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94호),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2024.6.20.발의

4.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기본권 제한 요소가 있는 지역의사 적용범위, 10년 의무복무, 전공의 수련 제한, 의무복무 위반시 면허 취소 및 재교부 금지 등 쟁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함.

-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확대하며, 비수도권 지역에 80%이상 집중 배정 및 지역인재선발 비율을 2025학년도 59.7%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의대생 지역실습 확대 및 전공의 지방배정 확대 등 지역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양성 트랙을 강화해 나갈 것임.

□ 정부는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 지역에 남고 지역근무 유인책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괄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 중임. 지역의사제의 골자는 10년 의무복무인데 이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수용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의료계 등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2) 기획재정부

□ 지역의사 보수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사용자 부담원칙 위배 등으로 인해 수용 곤란하며, 지원과목, 의료기관·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논의 없이 동 조항이 포함될 경우 재원 소요가 무한히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교육부

- 해당 법률이 제정될 경우 대학에 대한 대입전형 운영 및 신입생 선발에 대한 상당한 자율권 침해가 우려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 중인 지역인재전형을 내실화하는 것이 효과적임.

(3) 전라북도

- 단기적으로 지역의료인력 확보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함. 하지만 기존 의대에서 민간영역의사와 공공의사의 동시 교육에 따른 한계가 있고, 일부 교육내용 및 입학전형 차이로 인한 학생간 위화감과 갈등 조성 우려가 있음. 중장기적으로 공공의료에 사명감이 있는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함.

(4) 부산광역시

- 장학금 지급 중단 사유 해소 시 재지원할 수 있도록 재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지역의사 재배치 인원 최소화 및 의료공백 발생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사 파견시 보건복지부와 지역의사가 배치된 시·도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주체로 시·도지사도 포함하는 등 수정이 필요함.

(5) 대한의사협회

□ 동 법률안들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시행 및 의사 면허 발급 후 지정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0년의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지역의료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규제 사항은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기존 2~5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도록 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도 참여유인이 낮아 지원율이 저조하는 등 실패한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오히려 의무복무기간을 늘려 지역에 의사를 강제 양성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내 의료 현실을 외면한 방안에 불과함.
- 지역 인프라 확충 및 적정보상 방안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정책을 충분히 마련하여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정 의사인력 수급 및 배치를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며 수급추계 전문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6) 대한치과의사협회

□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 침해의 성격이 있으며, 장래에 변동될 수 있는 거취 문제의 특수사항을 고려하지 못한 법안으로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충분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함.

(7) 대한한 의사협회

-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 제정 취지와 각 조항에 대해 동의함. 다만, 현재 한의사의 경우 인력과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지역 의사선발전형시 기존 한의과대학의 정규 정원 내에서만 선발하고, 정원외로 추가로 선발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확실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지역 및 지역 의사 적용 범위

가. 내용

- 김원이의원안은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지역의 범위를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함(안 제2조 제1항).

지역 의사의 적용범위로는 박덕흠의원안은 의사만 규정한 반면(안 제2조제1항), 김원이의원안은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한의사 까지 포함함(안 제2조제2항).

김원이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이란 특별시·광역시·<u>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u>(이하 “시·도”라 한다) 중 <u>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u>을 말한다. 2. “지역 의사”란 제7조에 따라 <u>특정 지역 내에서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u>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의사”란 <u>지역 내의</u>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근무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u>의사</u>를 말한다.

나. 검토의견

□ (지역 정의) 김원이의원안은 “지역”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중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지역의사”란 “특정 지역 내에서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말한다”고 하여 지역의사제도가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박덕흠의원안은 “지역”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지역의사선발전형 관련 조항에서도 지역을 한정하는 내용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지역의사 근무와 관련하여 보건소 및 공공병원을 근무기관으로 지정할 때는 특별시·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곳으로 한정(공중보건의사의 경우와 동일)⁴⁾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려는 두 제정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 지역의 제한을 둘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병원”이라 한다)
3.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4.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에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있는 기관 및 시설로 한정한다.

□ (적용범위) 김원이의원안은 지역의사의 적용범위에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포함하고 있는데, 통계상 치과의사·한의사의 지역 간 분포 격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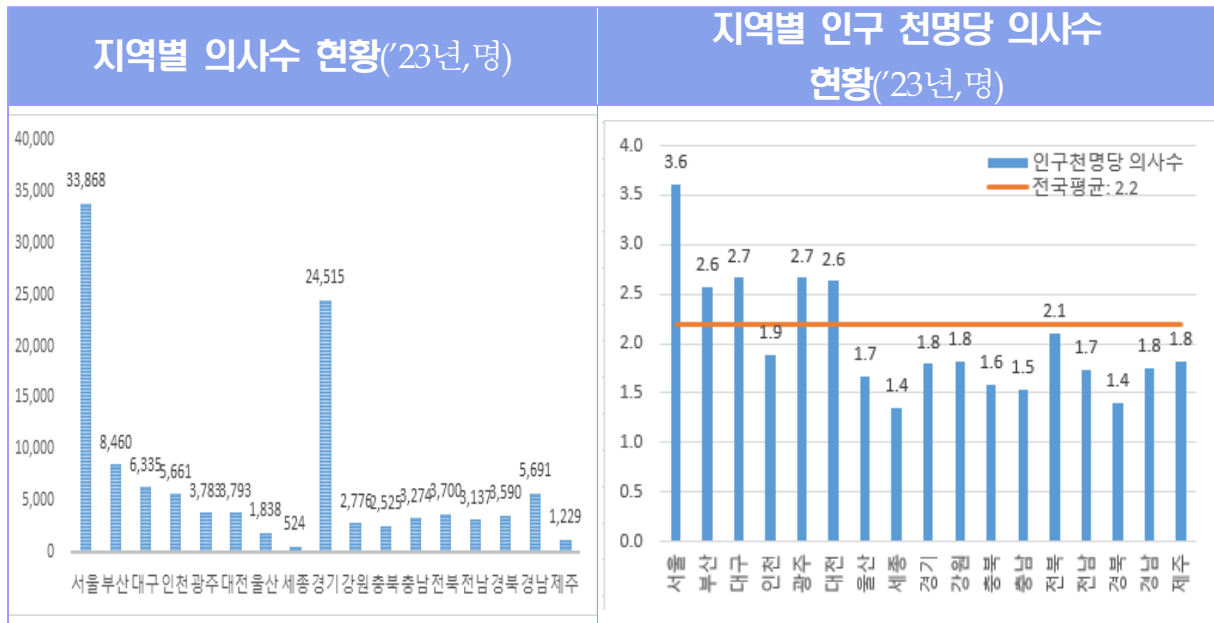
<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 >

(2023.12월 기준)

시도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수	인구 천명당 활동 치과의사수	인구 천명당 활동 한의사수
전국	2.2	0.6	0.5
서울	3.6	0.8	0.6
부산	2.6	0.6	0.6
대구	2.7	0.6	0.5
인천	1.9	0.5	0.4
광주	2.7	0.8	0.5
대전	2.6	0.6	0.5
울산	1.7	0.5	0.4
세종	1.4	0.4	0.4
경기	1.8	0.5	0.4
강원	1.8	0.5	0.4
충북	1.6	0.5	0.4
충남	1.5	0.5	0.4
전북	2.1	0.5	0.5
전남	1.7	0.4	0.4
경북	1.4	0.4	0.4
경남	1.8	0.5	0.4
제주	1.8	0.5	0.4

자료: 보건복지부

< 지역별 의사 수 >



* 인구 천명당 의사 수 서울 3.6명(최고) 대비 경북 1.4명(최저)(전국 평균 2.2명)

자료: 보건복지부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지역 의사 적용범위(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수급 상황이 심각한 의사, 특히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의 확보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타 법안(「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대한한의사협회) 현재 한의사의 경우 인력과잉 문제가 심각한 상황⁵⁾이므로 한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임. 따라서 지역 의사선발전형시 기존 한의과대학의 정규 정원내에서만 선발하고, 정원외로 추가로 선발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확실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2020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785명 2035년 기준 1,751명 한의사 인력 공급 과잉

2. 지역의사선발전형

가. 내용

- 두 제정안은 각 대학의 장이 입학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면서,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은 김원이의원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일정 비율 이상은 해당 대학 소재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안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박덕흠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 김원이의원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을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3항).

김원이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역의사선발전형”이란 지역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대학 입학 전형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역의사선발전형”이란 지역의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입학전형을 말한다.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 ① 의학·치의학·한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해당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제5조(지역의사선발전형) ① 대학의 장은 의과대학의 입학자 중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선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학의 의과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시·도별 의료취약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를 말한다)의 분포, 의료기관의 수 및 부족한 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을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는 입학자의 비율, 그 밖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지역의사선발전형 실시 대학) 제정안들은 안 제4조제1항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 대하여 지역적 적용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김원이의원안의 경우 제2조제1호에서 “지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중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한 부분(안 제4조제1항 후단)에 비추어볼 때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안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지역”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적용하려는 취지로도 보이는바, 그 취지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실시 대학의 지역적 범위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 제정안들은 의학(또는 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입학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김원이의원안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분포, 의료기관의 수 및 부족한 의료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도록 한 반면, 박덕흠의원안은 고려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에 관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할 내용을 대강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해당 대학 소재 시·도 고등학교 졸업자 일정비율 선발) 김원이
의원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할 때 해당 대학의 의과대학
이 소재한 시·도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일정 비율 이
상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4조제1항 후단)6), 이는 해당
지역 출신인 경우 의무복무 후에도 해당 지역에 정착하여 근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이해됨.

다만, 법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 출신 선발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한
정하고 있어 치의대와 한의대는 제외되고, 의과대학이 없는 시·도
(전라남도, 세종시)의 경우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의
대 진학시 타 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
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공공의료 관련 과정 등 추가 이수) 김원이의원안은 지역의사선
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안 제4조

6) 한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지역인재전형 요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여야 하며,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므로, 김원이의원안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요건과 다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생략)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2021. 3. 23.>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3항), 지역의사로 선발된 대학생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교과 과정을 통해 지역의사로서의 공공성 및 지역 밀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교과과정의 이수대상인 학생 뿐 아니라 운영 주체인 ‘대학’에 대하여도 별도의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정부는 자발적 계약을 통해 지역에 남도록 하고, 지역근무 유인책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괄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 사제 도입을 추진 중임.

-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타 법안(「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 해당 법률이 제정될 경우 대학에 대한 대입전형 운영 및 신입생 선발에 대한 상당한 자율권 침해가 우려됨.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재 의과대학은 지역인재를 25학년도부터 59.7% 이상 선발 예정이므로 지역정주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 운영중인 지역인재전형을 내실화하는 것이 효과적임.⁷⁾

7) ※ 전형간 비교

3. 의무복무(또는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

가. 내용

- 두 제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이 의사(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받은 후 지정 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또는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김원이의원안 제7조, 박덕흠의원안 제8조·제9조 및 제13조).
- 복무(근무)기간은 두 제정안 모두 10년이고 군복무 기간은 복무(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특정 수련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수련기간은 지역의사 복무(근무)기간에 산입함(김원이의원안 제8조, 박덕흠의원안 제17조제2항). 박덕흠의원안은 의무장교·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하는 경우도 그 복무기간을 지역의사 근무기간에 산입함(안 제17조제1항).
- 복무(근무)기관은 두 제정안 모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시설로 규정하나, 김원이의원안의 경우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공고한 시·도 내에서 복무하도록 지역적 제한을 두고 있고, 박덕흠의원안은 근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기관의 종류를 보건소·공공병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김원이의원안

전형	지원자격	의무복무
지역인재전형	지역중·고 졸업	X
지역의사전형	대통령령으로 정함	10년

자료: 교육부

제7조제1항 및 제9조, 박덕흠의원안 제10조).

- 그 밖에 복무지역의 변경, 다른 지역·시설·기관으로의 파견, 겸직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김원이의원안 제10조 및 제11조, 박덕흠의원안 제11조·제12조·제14조 및 제15조).

김원이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7조(의무복무) ① 제5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u>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공고한 시·도 내에서</u>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시설(이하 “의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8조(지역의사) 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의 면허를 받은 때부터 지역의사로 본다. ② 제23조에 따라 지역의사의 신분을 상실한 사람 중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의사의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은 면허를 재교부받은 때부터 지역의사로 본다. 제13조(근무기간) ① 지역의사의 근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가 된 사람의 근무기간은 10년에서 지역의사의 신분을 상실하기 이전에 지역의사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제9조(근무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역의사가 된 사람 또는 제16조에 따른 근무중지기간이 종료된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정하여 근무할 것을 명하고, 이를 해당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배치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한 기관의 장을

김원이의원안	박덕흠의원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4. 그 밖에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를 소집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한 후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근무기간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근무의 중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그 기간동안 근무명령 또는 근무를 유예하거나 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명령 또는 근무를 유예하거나 근무를 중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김원이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8조(전공의 수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외사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수련 전문과목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② 지역외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 지역 내에서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수련전문과목을 선택하여 전공의 수련을 하는 경우에는 수련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한다. 제9조(의무복무기관 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외사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시·도지	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을 위해 수련을 받는 경우 4. 질병, 심신상의 장애, 그 밖에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근무가 중지된 지역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의 중지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근무기간의 특례)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외사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장교,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을 근무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1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지역외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에는 그 수련기간을 근무기간에 산입한다. 제10조(근무기관 및 근무시설) 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김원이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지역의를 배치하고, 해당 지역 의사 및 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의무복무기관의 지정 및 지역 의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지역 의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해당 의무복무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 의사 배치의 시기,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무복무지역의 변경 등) ① 제9조에 따라 배치된 지역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복무지역 또는 의무복무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이하 “공공병원”이라 한다) 3.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4.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있는 기관 및 시설로 한정한다. 제11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내에서의 변경은 해당 시·도지사가 한다. ② 지역 의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 내에서

김원이의원안	박덕흠의원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의를 다른 시·도의 기관·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감염병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의사를 해당 시·도 내의 다른 기관·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 변경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같은 기관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 같은 시·도 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 그 밖에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 근무시설을 변경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을 변경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외 근무지역 등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의사의 파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의사를 다른 지역·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 내의 파견은 해당 시·도지사가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견은 제10조에 따른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김원이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다른 의무복무지역·의무복무기관 변경 및 파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의사의 겸직금지) 지역의사는 제7조1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의무복무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른 전공의 수련을 위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지역의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내로 한다. 제14조(근무장소 이탈 금지) 지역의사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겸직금지) ① 근무 중인 지역의사는 해당 근무기관·근무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는 지역의사의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허가한 근무기관·근무시설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1) 의무복무의 위헌성 여부

- 김원이의원안은 지역 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 지역 의사선발전형에서 공고한 시·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시설에서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7조 제1항).

박덕흠의원안은 지역 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이 의사면허를 받은 때부터 지역 의사가 된 것으로 보고 지역 의사가 된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명령’을 내리는데(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 지역 의사는 이 근무명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시설·기관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두 제정안 간 복무의 실질은 유사한 것으로 보임.

- 의료계는 장기 의무복무 제도가 직업의 자유와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고, 기간의 위헌성 등으로 인해 의무복무 기간이 축소되거나 의무복무의 거부가 허용될 경우에는 정책이 실패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함.⁸⁾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군법무관이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결정

8)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을 내린 결정⁹⁾ 및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대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과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면서 각하한 바 있음¹⁰⁾을 참고할 때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해당 관례에서 군법무관은 사법시험이 아닌 군법무관 임용시험이라는 별도의 방식으로 변호사가 된 자로서, 서로 다른 시험을 치른 자들에게 다른 복무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하나, 의사의 경우 지역 의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의사국가시험이라는 동일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지역 의사에게 장기 복무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

9) 헌법재판소 2007. 5. 31. 2006헌마767 결정

【판시사항】

가.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들에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하여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군법무관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조항은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군사법(軍司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고, 군법무관으로 하여금 장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고, 이로써 군사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군법무관이 전역할 경우 어떠한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인정할 것인지, 또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문제는 군법무관제도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기보다 입법정책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데, 이 사건 조항이 변호사 자격의 유지 조건으로 군법무관의 복무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과 합리적인 연관관계가 인정된다.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0) 헌법재판소 2018헌마158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은 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17년 4월 경 공중보건의사가 되어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공중보건의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변경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중보건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로 선택하여 복무하기 시작한 때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및 현역병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고, 이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

해한다는 주장¹¹⁾ 등도 제기됨.

- 위헌성 논란에 따라 정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변경·폐지되는 경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정책 설계 시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복무기간 및 복무기관 등

- (복무기간) 두 제정안 모두 복무기간은 10년이고 군복무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보건복지부장관(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전공의 수련기간은 지역 의사 복무기간에 산입함. 박덕흠의원안은 의무장교·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하는 경우 그 복무기간은 지역 의사 근무기간에 산입하고, 지역 의사 업무수행 및 지역 의료 관련 직무교육 기간도 근무기간에 산입함(김원이의원안 제7조 및 제8조, 박덕흠의원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
- 의무복무 중지 사유로 김원이의원안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안 제7조제2항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 규정한 면허자격 정지사유(안 제15조제3항: 지역 의사가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도 의무복무 중지 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특정 수련전문과목에 대하여 전공의 수련기간을 지역 의사 복무기

11) “지역의사제 ‘위헌성’,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판례가 보여준다”, 메디게이트 뉴스, 2024. 1. 29.

간에 산입하는 것은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인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수련과목에 따라 4~5년의 수련기간이 지역의사 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수련전문과목의 종류는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김원이의원안)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박덕흠의원안)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김원이의원안의 경우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지역의사가 된 자는 전문의가 되려고 할 때 전문과목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부 전문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바,

수련전문과목을 정하는 기준을 법률에서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복무기관) 김원이의원안의 경우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공고한 시·도 내에서 복무하도록 지역적 제한을 두면서 공공이나 민간기관·시설 제한 없이 복무가 가능하고(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 박덕흠의원안은 공중보건의사¹²⁾의 경우와 유사하게 근무기관으로 지정할

1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병원”이라 한다)

3.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4.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에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있는 기관 및 시설로 한정한다.

수 있는 시설·기관의 종류를 보건소·공공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는 점에서 두 제정안 간 차이가 있는바,

지역 내에서의 교육 및 근무의 연속성 확보에 따른 지역 내 정착 가능성 제고의 필요성, 공공의료 부족 문제의 해결 필요성, 공중보건의 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김원이의원안의 경우 의무복무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시설’로 규정한 점(안 제7조제1항), 의무복무 실태보고와 관련하여 지역이사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경우 보고절차를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점(안 제12조제3항)에 비추어 볼 때, ‘보건의료 관련’ 기관만을 복무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자구 수정 사항으로, 김원이의원안 제8조제2항(특정 수련 전문과목 전공의 수련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및 제10조(의무복무 지역 변경, 다른 지역에서의 파견)는 제7조제1항(‘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공고한 시·도 내’에서 ‘10년간’ 복무하여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법문상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겸직금지

□ 김원이의원안은 지역의사는 의무복무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의무복무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제8조 제2항에 따른 전공의 수련(의무복무지역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전문과목 수련)을 위한 근무는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1조).

박덕흠의원안은 해당 근무기관·시설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안 제15조) 허가시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전문과목에 관계없이 전공의 수련기간 동안은 지역의사 근무가 중지됨(안 제16조제1항제3호).

□ 현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조¹³⁾에서는 전공의는 수련병원·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근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맞추어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3)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1. 제13조에 따라 해당 전공의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 임용된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법적 강제성 대신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방식이 바람직하므로, 자발적 계약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경우 충분한 소득과 정주여건을 보장하고, 지자체가 종사기관·분야를 정하도록 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타 법안(「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대한의사협회)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거주 이전 자유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현재 공중보건장학제도(2019년 재도입된 이후 신청인원은 5년 연속 목표치의 절반인 10명 수준에 불과, 2023년 신규선발 인원도 2명 수준), 군 의대 위탁교육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무복무기간이 2~5배나 많은 동 지역의사제도는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큼.

- 현재도 많은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이 비효율과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 적자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구조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 없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할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역의사선발전형’ 및 ‘지역의사 의무복무’조항 신설 등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방식일 것이

며, 체계개선 없이 국민의 혈세가 지역 보건의료인력 양성에만
치우쳐져 국고가 크게 낭비될 수 있음.

- (부산광역시) 지역의사 파견 관련하여,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
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역의사를 재배치하려
는 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지역의사가 빠져나간 지역은 의료
공백의 위기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의사의 파견시 지
역의사가 배치된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
요가 있음.

4. 장학금 지원·중단·반환 및 보수 등 지원

가. 내용

- 두 제정안은 국가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도록 하
고, 휴학·유급 등의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며, 퇴학·자퇴·의무
복무 미이행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장학금을 반납할 것을 규정
하고 있음(김원이의원안 제5조 및 제6조, 박덕흠의원안 제6조 및
제7조).
- 지역의사에 대하여는 직무교육, 경력개발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실
시할 수 있고, 지역의사 복무(근무)를 완료한 자에 대하여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국제기구 파견 우선선발 등 우대조치
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김원이의원안 제14조, 박덕흠
의원안 제24조).

- 박덕흠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사에게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8조).

김원이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5조(장학금 지원) 국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 지원) ① 국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과대학등의 학생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시기·지급절차·지급방법 등 장학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장학금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5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휴학하거나 유급되는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퇴학 또는 자퇴한 사람 2. 해당 교육과정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제7조(장학금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국가는 제6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장학금의 지원을 중단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장학금을 다시 지원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에 따라 휴학하는 경우 2. 「고등교육법」 제23조의5에 따라 학사학위의 취득을 유예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7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⑤ 반환금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경우
4. 그 외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6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퇴학 또는 자퇴하는 경우
 2.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이하 이 조에서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역 의사 근무를 완료하기 전에 제22조 또는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채로 반환금을 납부한 사람이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 의사로 편입된 경우 납부한 반환금을 그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의사 등에 대한 지원)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무복무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지역의사를 해당 기관 또는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고, 국제기구 파견 우선선발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가 근무 중에 제2항제3호에 따라 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의사로 근무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그 외 장학금의 지급 중단, 반환금의 납부, 반환금의 면제, 반환금의 재지급, 반환금의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역의사 등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 부여 및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의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교육, 경력개발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사로 근무를 완료한 사람이 근무한 시·도 또는 시·군·구 내의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

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의 장은 지역의사로 근무를 완료한 사람을 공공병원 또는 해당기관·시설에 우선 채용할 수 있고, 국제기구 파견 우선선발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보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에게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등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② 지역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시설의 장이 지급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가 근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

	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기관·시설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또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1) 장학금 지급·반환 등

□ 두 제정안 모두 장학금 지급주체를 국가로 규정하고,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김원이의원안 제5조, 박덕흠의원안 제6조). 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사 양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김원이의원안 제7조제1항에서는 의무복무의 주체를 “제5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은 사람”으로 하고 있는데, 장학금 지원 여부에 따라 의무복무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장학금 반환과 관련하여 두 제정안 모두 반환 사유 발생시 장학금 금과 법정이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환 사유로는 퇴학·자퇴,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사등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등 면허가 취소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김원이의원안 제6조, 박덕흠의원안 제7조).

두 제정안에서 “법정이자”를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민법」 제 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 등과 같이 이자 산출시 적용되는 법률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김원이의원안은 “제7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제6조제2항제4호)도 장학금 반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5조제1항14)에 따라 “제7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당연 면허 취소 대상이 되고, 안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이미 장학금 반환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¹⁵⁾ 중복 규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박덕흠의원안은 장학금 반환 후라 하더라도 졸업 후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였다면 반환금을 다시 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4항), 지역의사 근무 중에 의사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역의사로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14) 제15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가 제7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5) 박덕흠의원안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안 제20조 제1항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며(안 제22조제1항제1호), 지역의사 근무를 완료하기 전에 의사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장학금 반환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7조제2항제3호).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안 제7조제5항) 하는 등의 규정을 추가로 두고 있음.

(2) 지역 의사 보수 지원 등

- 박덕흠의원안은 지역 의사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하도록 하고 민간의료기관이 지역 의사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으며(안 제18조제1항 및 제5항),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의사로 근무를 완료한 사람이 근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4조제2항).

이는 지역 의사의 보수 지급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의사 근무 완료 후에도 계속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경우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내 근무의 연속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이에 대하여 의료기관 근무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여타 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곤란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제시되어 온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정부는 자발적 계약을 통해 지역에 남도록 하고, 지역근무 유인책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괄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 사제 도입을 추진 중임.

-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타 법안(「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 의료기관 근무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은 사용자 부담 원칙 위배,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여타 직역과의 형평성, 국민적 반감 등을 고려하여 수용 곤란함.

- 의료행위에 대한 인건비성 보상은 의료행위의 빈도·난도를 고려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지원과목, 의료기관·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논의 없이, 동 조항이 포함될 경우 재원 소요가 무한히 확대될 우려가 있음.

□ (부산광역시) 장학금 지급 중단 관련하여, 중단 사유 해소시 재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지역의사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 뿐 아니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을 및 지역의사 의무복무 준수율을 높이는 데 동 조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복무관리, 면허 자격정지 및 취소 등

가. 내용

- 두 제정안은 지역의사의 근무실적 보고절차(복무기관→관할 시·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를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지역의사가 이 법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면허 취소 및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김원이의원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 박덕흠의원안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

김원이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12조(의무복무 실태 보고 등) ① 의무복무기관의 장은 지역의사의 근무실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u>지역의사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시·도지사 및 보건복</u>	제19조(근무의 감독) ①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의 장은 지역의사의 근무에 관하여 관할지역 또는 해당 기관·시설에 근무하는 지역의사를 지도·감독한다.</u> ② 근무기관·근무시설의 장은 <u>매 분기마다</u> 지역의사의 근무실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u>근무기관·근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보건복지</u>

김원이의원안	박덕흠의원안
<u>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u>지역의사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u> 제13조(시정명령 등) <u>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u> 지역의사선발, 양성, 관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대학의 장이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지역의사가 <u>이 법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u>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u>부 또는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기관·근무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u> <u>이 경우 근무기관·근무시설의 장 또는 관계 직원은</u>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u>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u> 제20조(시정명령) ① <u>보건복지부장관은</u>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u>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u>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u>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u> 2. <u>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2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u> 3. <u>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를 위반하여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u> 4. <u>제15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경우</u> 5. <u>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우</u> ② <u>보건복지부장관은</u> 근무기관·

김원이의원안	박덕흠의원안
	근무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u>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u>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u>검직을 허가한 경우</u>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u>지역의사의 근무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u> 제21조(근무기간의 연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지역의사가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장소를 이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u>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u>지역의사가 제20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u>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u>지역의사가 제16조에 따른 근무의 중지 없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u>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을 명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u>

김원이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제15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의사가 제7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의사 면허의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의사가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2조(면허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5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의료법」 제5조에 따른 면허를 말한다)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를 위반하여 근무기간 중 통틀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3.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틀어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경우 4. 그 밖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지역 의사로 근무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면허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신분 상실) 지역 의사가 의사 등의 면허를 상실한 경우에는 지역 의사의 신분을 상실한다.

나. 검토의견

- (근무 감독) 두 제정안은 지역의사의 복무실태(또는 근무실적)에 대한 보고체계를 복무기관, 관할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차례로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김원이의원안 제12조, 박덕흠의원안 제19조),

김원이의원안은 지역의사가 행정기관에서 복무하는 경우에는 보고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안 제12조 제3항), 박덕흠의원안은 지역의사의 지도·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근무기관·시설의 장에게 있다는 것(안 제19조제1항), 보고 또는 자료제출시 준수사항(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

- (시정명령 및 면허취소) 두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음(김원이의원안 제13조, 박덕흠의원안 제20조).

김원이의원안은 시정명령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로, 객체를 ‘대학의 장, 의료기관의 장, 지역의사’로 규정하고 “이 법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13조),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16)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는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을

16)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받는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지역 의사에 대하여는 안 제15조제3항에서 면허자격 정지라는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학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박덕흠의원안은 시정명령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객체는 ‘지역의사, 근무기관·시설의 장’으로 각각 규정하면서 시정명령의 사유를 열거하고,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안 제21조).

- (근무기간의 연장) 박덕흠의원안은 지역의사가 근무장소 이탈, 겸직금지 위반, 근무중지 후 다른 의료기관 근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1조).

근무기간 연장 명령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10년보다 연장되는 경우 안 제13조제1항에서 “지역의사의 근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는 규정과 충돌될 소지가 있으므로, 근무기간 연장 명령을 받은 경우 안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은 10년보다 연장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면허취소 및 재교부) 두 제정안은 시정명령 불응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김원이의원안 제15조, 박덕흠의원안 제22조).

김원이의원안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이 정지되고, 의무복무를 미이행한 경우 면허가 취소됨 (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박덕흠의원안에서는 시정명령 불응, 근무장소 이탈, 검직금지 위반,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를 면허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22조).

김원이의원안에서는 면허가 취소된 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는 「의료법」 제65조제2항17)에 따른 의사면허의 재교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15조제2항), 안 제3조18)에 따라 의사면허 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 우선하여 제정안이 적용되므로, 안 제15조제2항의 반대해석상 의무복무 기간(10년)이 경과하면 의사면허 재교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65조제2항의 규정방식과 같이 면허취소의 재교부에 관한 기본사항을 명시한

-
- 17)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삭제 <2016. 12. 20.>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선(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 18)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역의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지역의사 양성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후 재교부의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이 입법기술상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¹⁹⁾.

이 경우, 「의료법」 제65조제2항에서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지역 의사의 경우에도 제정안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잔여 의무복무 이행 등 일정 조건 하에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들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부산광역시) 제정안의 면허취소 조항은 의료법의 규정을 넘어선 것으로 과잉 입법의 소지가 있는바, 삭제 또는 적정 수준으로 수정이 필요함.

19) ○ 의사면허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은 조건부 면허(제11조) → 면허취소(제65조제1항) → 재교부(제65조제2항 전단) → 재교부 제한(제65조제2항 후단)의 단계적 구조
○ 김원이 의원안은 의무복무(제7조) → 면허취소(제15조제1항) → 재교부 제한(제15조제2항)으로 되어 있어 재교부에 관한 사항 명시적 조문 부재

6. 지역의료발전기금

가. 내용

- 박덕흠의원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간 의료격차의 해소와 의료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6조).

박덕흠의원안
제25조(지역의료발전기금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간 의료격차의 해소와 의료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7조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반환금 5.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7.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8조에 따라 징수하는 과태료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④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6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박덕흠의원안

2. 제7조제4항에 따른 반환금의 재지급
 3. 제18조제5항에 따른 보수 또는 수당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지역의사 등에 대한 지원
 5. 정부의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8. 그 밖에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역의료발전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작성 및 개정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의료·보건정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 또는 학식을 가진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박덕흠의원안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장학금 및 지역 의사 보수 등을 포함한 지역의료발전사업에 사용하려는 것인데, 지역의료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지역의료기관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의료취약지 대상 필요한 기반 구축 등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국가재정법」²⁰⁾에 따르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제한적²¹⁾으로 설치 가능한 것인데, 제정안에 따른 지역의료발전기금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을 뿐 자체적인 ‘특정한 자금’을 수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바, 별도 기금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은 기금은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대한 개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별표 2에 제72호(「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20)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21) 기금의 형식이 남용되는 경우, 단일한 예산절차 속에서 전체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통합하여 조율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재정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음.

특별법」)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97호)가 2024. 6. 21.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임.

- 또한, 제정안 외에도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 2건²²⁾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바, 제정안 심사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기금설치·운용을 통해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함.
 - 다만, 기금의 구체적인 재원, 용도 등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타 법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
- (부산광역시) 지자체가 지역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2)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694호): “지역의료발전기금”(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617호): “지역·필수의료기금”(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7. 부칙

가. 내용

- 두 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김원이·박덕흠의원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두 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는데,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명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법률 제17956호, 2021. 3. 23.)²³⁾에서는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하고, 선발대상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적용례를 둔 바 있음.

23) 부칙 <법률 제17956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선발대상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문 의 처
02)6788-5494